

**제 2384호**  
**2015. 07. 2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조 려
  - 제126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 제12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공 고
  - 제2015-504호 : 『제25회 중구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 2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  
 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원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각 동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구 분	근무조장 (휴대전화)	근 무 조 원	비 고
제1근무조			
제2근무조			
제3근무조			
제4근무조			
제5근무조			
제6근무조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설립취지, 자율방범대의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2조~ 안 제4조)

- 1) 조직구성 : 행정동 단위 1개 편성, 10명 이상으로 구성
- 2) 활동내용 : 범죄취약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다.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1) 활동범위 : 해당 행정동 관할지역
- 2) 등록절차 : 자율방범대 신설·운영 시 설립·등록 신고서 제출 등

라.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제한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1) 경비지원 :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경비
- 2) 제한사항 : 전년도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지원금 가감

마. 방범대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조 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제1항 중“1회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④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⑤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 제목“분과위원회”를“소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구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자”를 “심의·자문 안건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다음에 제3장(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13조(공동위원회의 목적)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주민편의성, 행정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4.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완화에 대한 심의
5.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서 하며,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공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설&gt;</b></p> <p><b>제2조(기능)</b>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관계법령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의2(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b> 서울특별시중구(이하“중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b></p> <p><b>제2조(기능)</b>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ol>



현행	개정안
<p><b>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b>①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b>제5조(위원회의 운영)</b>①(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④ &lt;신설&gt;</p> <p>⑤ &lt;신설&gt;</p> <p><b>제6조(분과위원회)</b>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사항</p> <p>2. 제2분과위원회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사항</p>	<p><b>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b>①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p> <p><b>제5조(위원회의 운영)</b>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한</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p> <p>⑤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은 <u>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u></p> <p><b>제6조(소위원회)</b>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하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해야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b>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b>①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생략)</p> <p>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생략)</p> <p>③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생략)</p> <p><b>제10조(회의의 비공개)</b>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p><b>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b>①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p>1.(현행과 같음)</p> <p>2.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현행과 같음)</p> <p>③심의·자문 안건과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현행과 같음)</p> <p><b>제10조(회의의 비공개)</b>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p> <p><b>제10조의2(비밀준수)</b>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b></p> <p><b>제13조(공동위원회의 목적)</b>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p>

연	행	개	정	안
	<p>써 행정절차 간소화·주민편의성·행정의 투명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lt;신설&gt;</u></p> <p><b>제14조(공동위원회의 기능)</b>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li> <li>2. 관계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li> <li>3. 구청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li> <li>4.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및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규제행위완화에 대한 심의</li> <li>5.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li> </ol> <p><u>&lt;신설&gt;</u></p> <p><b>제15조(공동위원회의 구성)</b>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li> <li>2.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li> </ol>			

현	행	개	정	안
<p>&lt;신설&gt;</p>	<p>청장이 위촉하는 자</p> <p>3.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p> <p><b>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b>공동위원회의 운영 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계획관련 제반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명칭 개정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규정 신설
  -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로 개정
  - 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 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 및 불필요한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504호

『제25회 중구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중구는 제17회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 및 단체를 발굴·시상하고자 하오니 시상부문별 공적이 우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시상개요 】

- 추천기간 : 2015. 7. 23.(목) ~ 9. 4.(금)
- 추천대상
  - \* 중구구민상 시상부문별 공적이 우수한 모범 구민 및 단체로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2015. 7. 22.)까지 우리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및 단체
  - \* 단, 각 부문별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부문 및 선정인원
  - \* **봉사상(1)** : 지역 및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 \* **효행상(1)** : 아버이를 지극 정성으로 공경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구민 및 단체
  - \* **장한 어버이상(1)** :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구민
  - \* **용감한 구민상(1)** :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지역사회의 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구민 및 단체
  - \* **모범 청소년상(1)** :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가진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 추천 제외대상

- 서울시시민상, 중구구민상 기 수상자
- 금년에 동일 공적으로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시상일시 : 2015. 10. 4.(일) 구민의 날 기념식시(예정)
- 시상내역 : 상패 수여

【 추천 및 접수 】

○ 추천권자

- \* 관내 행정기관·학교장, 관할동장, 구의원, 기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 \* 개인추천시 만 20세 이상 구민 30명 이상의 서명

○ 접수방법

- \* 방문접수 :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09:00~18:00 근무시간내 접수)
- \* 우편접수 : (우 100-701)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자치행정과(예관동)

※ 우편접수는 9. 4.(금) 18:00까지 도착 건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물 배송 중 분실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 \* 공적 증빙자료(공적 관련 활동사진 포함) 각 1부
- \*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 천연색) 1매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에서 추천 양식을 상시 다운로드 가능  
 (소통민원 > 참여마당 > 중구구민상)

【 선정 및 발표 】

- 일 자 : 2015. 9월 중
-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대상자 개별통지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외 중구청 자치행정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53) 및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람